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국가 책무 강화, 법률지원 확대 및
중앙 전담조직 신설 〉

- 백승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066호)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074호)
- 김기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223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문 근

목 차

I. 개요	1
II. 검토의견	2
1.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국가 책무 강화, 소송 지원 및 중앙 전담조직 신설	2
2. 개정안 부칙	39
 [참고자료 1]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 신고 현황	41
[참고자료 2] 학생·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현황	42
[참고자료 3] 피해교원 보호조치 현황	43
[참고자료 4] 교육활동보호센터 구성 현황	44
[참고자료 5] 교원에 대한 소송대리 등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 원문	45

I. 개요

1. 백승아의원안(의안번호 제20066호)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백승아의원 등 18인

(2) 발 의 일 : 2026. 7. 21.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교육활동 침해 문제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수준임. 최근 3년간(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는 매년 4천 건 이상 이루어졌고, 2025년 한 해 16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5만 7,966건에 달함. 또한,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아동학대 신고가 1,352건에 이르는 등 아동학대 신고 제도가 악용되는 문제도 심각한 수준임.

교원은 국가를 대신하여 학생을 교육하는 사람임. 따라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거나 그로 인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이를 교원 개인이 홀로 감당하도록 두어서는 아니 되며, 국가가 책임지고 교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법률지원

단의 지원은 법률 상담 중심에 머물러 있어 조사·수사나 소송 단계에 놓인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정작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안 초기에 조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아울러 그동안 마련된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으로 환류하는 체계도 미비함.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조사·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법률지원단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조사·수사 또는 소송의 시작 단계부터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모니터링·평가·조사·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이 법의 목적 및 교원에 대한 예우 규정에 명시함(안 제1조 및 제2조제3항 신설).

나.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대상에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6조제1항).

다.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조사·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

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추가함(안 제20조제1항제3호 신설).

라. 법률지원단의 업무에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 등을 추가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등에는 해당 교원이 조사·수사 시작 단계부터 지체 없이 법률지원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마.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모니터링·평가·조사·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인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29조의3 신설).

2. 서영교의원안(의안번호 제20074호)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2) 발 의 일 : 2026. 7. 21.
-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 발생되고 있고, 오히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이중으로 교원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두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및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또는 교원에게 제기된 민원에 대응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3. 김기웅의원안(의안번호 제20223호)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김기웅의원 등 11인
- (2) 발 의 일 : 2026. 7. 29.
- (3) 회 부 일 : 2026. 7.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하여 아동학대 신고와 민사·형사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원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공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교육감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관리하여 분쟁 및 소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 지원에 불과하여 한계가 있음.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할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행위를 정당한 직무수행으로서 간주하여 그 교육활동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교원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고의 목적이 교원에 대한 보복성이 명백한 무고로 신고한 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며, 피

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조사·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지원단의 법률상담뿐 아니라 소송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교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공교육의 질 강화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등).

II. 검토의견

1.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국가 책무 강화, 소송 지원 및 중앙 전담조직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3개의 개정안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①국가 책무 강화(백승아의원안, 김기웅의원안), ②법률지원단을 통한 소송지원(백승아의원안, 김기웅의원안), ③중앙 전담조직 설치(백승아의원안, 서영교의원안) 등 교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지원 규정을 신설·강화하려는 것임.

현 행	백승아의원안	서영교의원안	김기웅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강화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 ----- -----.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② (생략)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	백승아의원안	서영교의원안	김기웅의원안
<신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에 대한 예우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 및 교 육감은 교원의 교 육활동에 대한 보 호를 강화하기 위 하여 제19조에 따 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 제20조제1항 에 따른 피해교원 보호조치,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를 한 학생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③ 국가, 지방자치 단체, 그 밖의 공공 단체는 교원이 교 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4 항까지에서----- ----- ----- ----- ----- ----- ----- -----. 제16조(실태조사) ① ----- ----- ----- ----- ----- ----- -----제21조 에 따른 법률지원 단의 구성 및 운영, 제25조----- ----- ----- ----- ----- -----. ②·③ (현행과 같		

현행	백승아의원안	서영교의원안	김기웅의원안
			대한 보호)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지도·감독 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유아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직무수행으로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직무수행에 대하여 교원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고의 목적이 교원에 대

[illegible]

현행	백승아의원안	서영교의원안	김기웅의원안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원 등을----- ----- ----- -----.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이 조사·수사 또는 소송의 시작 단계부터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2.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 ----- -----. 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			

현행	백승아의원안	서영교의원안	김기웅의원안
<신설>	제29조의3(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의 환류에 관한 사항 3.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세부 기준 마련, 예방 대책 수립, 모니터링 및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원을 대상으로 제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지원에	제13조의2(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의 설치 등) 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둔다. 1. 제1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환류에 관한 사항 3.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4.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및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에 관한 사항 6. 학교 또는 교원에게 제기된 민	

현행	백승아의원안	서영교의원안	김기웅의원안
	관한 사항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에 관한 사항 6. 교육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원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행	백승아의원안	서영교의원안	김기웅의원안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조사의 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¹⁾에서는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한 각종 국가의 책무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①교원에 대한 예우 의무, ②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등이 있음.

또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부당 간섭·제한 행위(악성 민원 등)와 범죄행위(무고, 협박 등)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피해교원”에게는 심리상담, 치료 등 “보호조치”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에게는 봉사(학생), 서면사과(보호자등),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공통) 등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 추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근거도 두고 있음.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관련 조치]

교육활동 침해행위(「교원지위법」 제19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행한 다음의 행위 - 범죄 행위 •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학생(「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	보호자 등(「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	기타(「교원지위법」 제20조제4항)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진학 • 퇴학처분	•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가능

- 이와 같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으로 매년 4천 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현황]

(단위: 건)

구분(학년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심의 건수	2,269	3,035	5,050	4,234	4,034

* 자료: 교육부

** 2024년 이후 실적은 「교원지위법」 개정(시행: '24.3.28.)에 따라 교보위 이관 후의 실적만 집계

- 또한,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아동학대로 교원을 신고하거나, 교육 활동 침해행위 여부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해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는 등 교원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교원 상대 아동학대 신고 현황 및 처리 결과('23. 9. ~ '26. 2.)]

(단위: 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제출(A) (A=B+C)	진행 중 (B)	종결 내역					소계 (C)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불입건 등)	검사 결정 종결 내역			기타 (가소중지 등)	
			불기소	아동보호사건 처리	기소		
1,352 (전체 1,870)	359	212 (21.3%)	686 (69.1%)	42 (4.2%)	21 (2.1%)	32 (3.2%)	993 (100%)

* 자료: 교육부

-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교원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교육활동에 대한 심리적 부담 및 무력감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교육활동 전체가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져 교육의 질 저하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 참고로,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발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²⁾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교사의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는 응답이 49.2%로 나타났고, 교육 현장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요인 중 1순위로는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67.9%)가, 교직 이탈 및 신규 교직 기피의 주된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2) 「제45회 스승의날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 조사 기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조사 대상: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및 전문직
- 조사 기간: 2026. 4. 27. ~ 2026. 5. 5.
-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
- 총 응답자: 8,900명
-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신뢰도 ± 1.04%

신고 및 학부모 민원 노출’(28.9%) 및 ‘생활지도 무력화 및 교권 보호 기
제 부재’(23.5%)가 꼽힌 바 있음.

□ 이에 3개의 개정안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①국가 책무 강화, ②법률지원단을 통한 소송지원 실시, ③중
앙 전담조직 설치 등 교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및 지원 규정을 신
설·강화하려는 것으로,

(백승아의원안)은 이 법 목적 및 교원의 예우 조항에 교육활동 보
호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법률지원단과 관련하여 그 기능에
소송지원을, 실태조사 사항에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보호조치 사항
에 법률지원단 지원을 각각 추가하며, 교육활동 보호 등을 위한 전담
조직인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서영교의원안)은 교육활동 보호 등을 위한 교육부 내 전담부서로
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음.

(김기웅의원안)은 각급학교의 관할청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책
무로서 ①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 의무 및 ②교원 대상 허위
사실 신고 및 무고에 대한 고발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법률지원단의
기능에 소송지원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 비교]

구분		백승아의원안	서영교의원안	김기웅의원안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국가 책무 강화	국가 책무 명시	O (목적·예우 규정)	X	X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 의무	X	X	O
	허위사실 및 무고에 대한 고발 의무	X	X	O
법률지원단 기능에 소송지원 추가		O	X	O
교육활동보호 중앙 전담조직 설치	명칭	중앙교육활동보호 센터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	X
	법적 성격	명시 X	교육부 내 전담부서	X
	공통	①시행계획 이행 평가, ②실태조사 결과 환류		X
	업무 범위	개별 ①교육활동 침해행위 기준·예방·대응·조사 관련 사항, ②아동학대 신고 대응	①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대응 관련 사항, ②학교민원 대응	X

이는 법적 분쟁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을 보다 두텁게 보호
함과 나아가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한다는 이 법
목적과도 부합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국가 책무 강화(백승아의원안, 김기웅
의원안)

□ 백승아의원안 및 김기웅의원안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국가 책무를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백승아의원안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책무를 목적 규정 및 교원의 예우 규정에 명시하여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선언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김기웅의원안은 각급학교의 관할청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책무로서 ①교육활동(유아·학생생활지도 한정)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 의무 및 ②교원 대상 허위사실 신고 및 무고에 대한 고발 의무를 별도로 신설하여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비교]

구분	백승아의원안	김기웅의원안
책무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예우 규정 한정)	각급학교의 관할청 (국립: 교육부장관, 공·사립: 교육감)
책무 내용	①“법 목적”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보호 책임 명확화” 명시 ②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교육활동 보호 노력 의무	①교육활동(유아·학생생활지도 한정)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 의무 ②교원 대상 허위사실 신고 및 무고에 대한 고발 의무

□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백승아의원안에 따른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교육활동 보호 노력 의무”의 경우 현행법 제14조제1항3)에 따른 “국가·지자체·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교육활동 적극 협조 의무”와 그 취지 및 내용상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추가로, 개정안의 조문 위치 또한 ①교육활동 보호와 교원에 대한 예우 간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 ②현행 유사 규정인 “교육활동 적극 협조 의무”의 조문 위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둘째, 김기웅의원안에 따른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 의무의 경우 그 대상 및 조치 의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먼저, 의무 대상에 대해 개정안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생활지도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생활지도⁵⁾로 한정할 경우 나머지 교육활동은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호 범위가 다소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교육활동의 범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나, 교육부의 「2026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에서 교육활동의 정의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예시를 제시하고 있음.

「학교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u>교육활동</u>”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

- 4)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 5)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2026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참고: ‘교육활동 중’의 예시 ①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u>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u> ② 학생의 등·하교 시간에 행하는 <u>생활지도</u> 및 일과 시간 이외의 <u>교외생활지도</u> ③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④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행하는 <u>생활지도나 상담</u> ⑤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에 행하는 <u>생활지도나 상담</u> ⑥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 행하는 <u>생활지도나 상담</u> ⑦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u>왕복 시간 중 입장 시 행하는 활동</u> ⑧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학생징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u>사안 조사 및 상담 등</u> ⑨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출근 시간 전 또는 퇴근 시간 후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의 상황·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u>학생에 관한 상담</u> ⑩ 그 밖에 법령에 의해 교원이 직무상 행하는 교육활동 및 <u>생활지도</u>

다음으로, 조치 의무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안에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로 추상적으로 규정할 뿐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사항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민·형사상 면책 규정 입법례⁶⁾는 다수 있으나, 민·형사상 면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 ③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책을 위한 조치 관련 입법례는 달리 없는 상황임.

- 셋째, 김기웅의원안에 따른 “교원 대상 허위사실 신고 및 무고에 대한 고발 의무”의 경우 현행법 제20조제4항7)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임의적 고발 규정의 특례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조 신설이 아닌 현행 고발 규정의 단서 신설로 개정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법률지원단 기능에 소송지원 추가(백승아의원안, 김기웅의원안)

- 백승아의원안 및 김기웅의원안은 법률지원단이 소송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사항으로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백승아의원안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해서는 법률지원단의 조력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고, 현행법 제16조8)에 따른 실태조사 사항에 법률지원단의 구성·운영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⑤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 보호조치,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김기웅의원안은 법률지원단의 구성·운영 주체를 기존 교육감에서 관할청으로 이원화하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3개의 개정안과 별도로 법률지원단 기능에 소송지원을 추가하려는 법률안들⁹⁾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교원에 대한 소송 지원 관련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	이준석의원안 (제11405호)	김정재의원안 (제10513호)	김선교의원안 (제19057호)	백승아의의원안 (제20066호)	김기웅의원안 (제20223호)
① 조제목	·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② 지원가능사안	·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 학생지도, 생활지도, 학급운영 등 <u>정당한 교육활동</u>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 제19조에 따른 <u>교육활동 침해 행위</u> 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 <u>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 분쟁</u> 이 발생하거나 <u>소송을 수행하는 경우</u>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③ 지원내용	· 법률 상담	· 법률 상담 또는 <u>소송대리</u> 등의 지원 * 소송 지원 전 시·도교육권보호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의 필요(긴급한 경우 사후 심의 가능)	· 법률 상담 등 -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소송수행시 변호인 선임 또는 <u>법률지원단을 통한 소송대리</u>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	· 법률 상담 또는 <u>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u>	· 법률 상담 및 <u>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u> 등	· 법률 상담 및 <u>소송 지원</u>
④ 기타	·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필요 사항 위임	·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및 <u>소송 지원</u> 필요 사항 위임 · 제18조(교육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제1항제2호에 시·도교육권보호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직무관련성 판단' 추가	-	· 법률지원단 구성 시 <u>법상 조계와의 협력 체계 구축</u> · <u>정당한 교육활동 관련 소송비용에 대한 구상권 불행사</u>	· <u>피해교원 보호 조치 사항으로 '법률지원단 지원' 추가</u> · <u>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한 법률지원단 조력 의무 신설</u>	· <u>피해교원 보호 조치 사항으로 '법률지원단의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추가</u>

주: 개정안 원문은 【참고 5】 교원에 대한 소송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 원문 참조

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김정재의원안(의안번호 제2210513호), 이준석의원안(제2211405호), 김선교의원안(제2219057호)

□ 현재 현행법 제29조¹⁰⁾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도 교육활동 보호센터에서는 법률지원단을 함께 운영하고 교원보호공제사업과 연계하면서, 분쟁조정, 법률상담, 소송비 지원 등 지역 단위의 원스톱 교육활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¹¹⁾.

['25학년도 교육활동보호센터 이용현황]

구분	이용 인원(명)	이용 건수(회)
상담	28,050	57,966
심리치료	1,928	4,999
법률상담	10,255	11,027
예방교육	644,297	26,190
기타	96,933	12,920
합계	781,463	113,102

* 자료: 교육부

[연도별 법률지원 현황]

구분	21학년도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	25학년도
법률상담	3,119건	3,187건	4,102건	7,143건	11,027건
소송비 지원*				258건	465건

* 전국단위 교원보호공제사업 통한 소송비 지원은 24학년도부터 시작

** 자료: 교육부

[「교원지위법」 상 법률 지원]

구분	법률지원단(제21조)	교원보호공제사업(제22조)	교육활동보호센터(제29조)
목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 발생 또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 발생시 교원 지원	• 교육활동 관련 각종 분쟁·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 지원
지원내용	• 법률 상담	•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 법률 자문(상담)
비고	* 시·도교육청별 운영방식 상이 * 교육활동보호센터와 연계 운영	-	-

*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0)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1) 「2026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p 74, 75

□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백승아의원안에 따라 법률지원단의 조력 보장 의무 대상인 아동학대 신고를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신고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 조력 시점 교육활동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가능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육활동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종국적으로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고려하면 교육감이 신고 시점에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의무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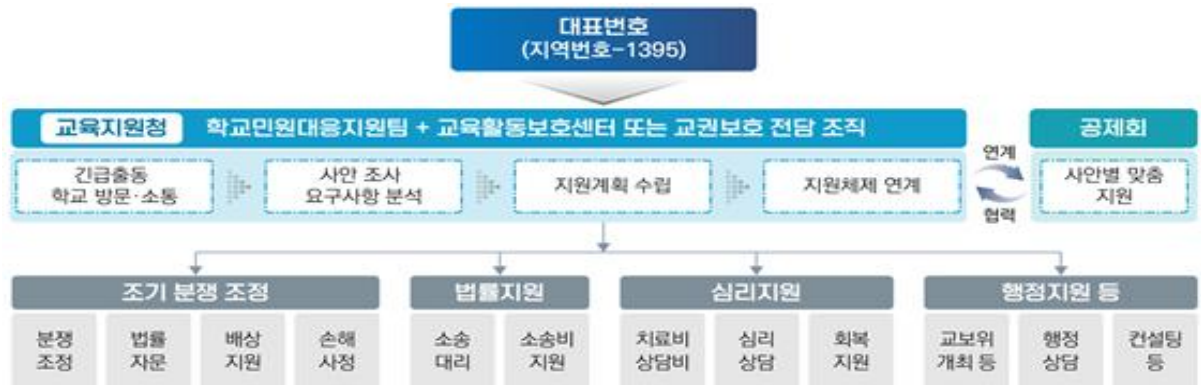
□ 둘째, 김기웅의원안에 따라 법률지원단의 구성·운영 주체를 기존 교육감에서 관할청으로 이원화하는 것에 대해 행정의 효율성 및 수요자의 편의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김기웅의원안에 따르면 국립·공립·사립이 통합되어 있는 체계에서 국립과 공·사립이 분리되는 체계로 변경되어 법률지원단이 지역 기준이 아닌 각급학교의 감독권 기준으로 이원화되는바,

이는 같은 시·도 내에서 중복으로 법률지원단을 설치·운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원서비스 수요자 또한 지원 요청 시 기관 선택에 대한 불편 및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교육활동보호 중앙 전담조직 설치(백승아의원안, 서영교의원안)

- 현행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2조의3¹²⁾은 교육감이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조직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재 시·도별로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전담시키고 있음.



* 자료: 교육부

- 한편, 교육활동 보호가 개별 시·도교육청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국가적 정책 과제라는 점에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시·도교육청에 대한 일관된 지원을 위하여 중앙 차원의 전문적·상시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¹³⁾.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제14조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운영
- 13)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의원실이 2026년 7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5개 교육청이 교육부 내 교권보호 전담조직 신설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남.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가 개별 시·도교육청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국가적 정책

- 이에 백승아의원안 및 서영교의원안은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그 명칭, 법적 성격, 업무 범위 등에 대해서는 각각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비교]

구분		백승아의원안	서영교의원안
교육활동보호 중앙 전담조직 설치	명칭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
	법적 성격	명시 X	교육부 내 전담부서
	업무 범위	공통 ①시행계획 이행 평가, ②실태조사 결과 환류	
	개별	①교육활동 침해행위 기준·예방·대응·조사 관련 사항, ②아동학대 신고 대응	①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대응 관련 사항, ②학교민원 대응
	기타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권한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로 이관	-

-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교육활동 보호 전담조직의 법적 성격에 대해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중앙행정기관 소속 전담조직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계선기관으로

과제로서 중앙 차원의 전문적·상시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도 정책 수립·제도 개선 및 일관된 교육청 지원 기능을 전담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교육부도 교권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과’ 단위의 별도 조직 설치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보도됨. 박종환, 「전국 15개 교육청 “교육부 내 교권보호 전담조직 필요”」, 『CBS노컷뉴스』, 2026. 7. 16.

서 기관장을 보조하여 법령 집행, 정책 결정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성격¹⁴⁾인 반면,

중앙센터 조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정·위탁기관이자 지방센터의 상급기관으로서 연구, 프로그램 개발·보급, 정책분석·평가, 지역센터 간 연계 등 정책의 연구·개발 및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연계·조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성격이 강한바,

이를 고려하여 교육활동 보호 전담조직의 설치 취지 및 주요 업무·성격에 맞춰 그 법적 성격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중앙행정기관 소속 전담조직 및 중앙센터 비교]

구분	중앙행정기관 소속 전담조직	중앙센터
법적 성격	중앙행정기관 내 계선조직	지정·위탁기관
업무 성격	법령 집행, 정책 결정 등 * 소관 업무 중 특정 업무 수행	연구, 프로그램 개발·보급, 정책분석·평가, 지역센터 간 연계 등
입법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 ¹⁵⁾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등 ¹⁶⁾

14) 「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전담조직의 설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손실보상을 위한 자료 수집·처리
2. 손실보상의 체계 구축 및 운영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6조(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인력지원

□ 둘째, 전담조직의 업무 중 일부가 아래와 같이 타 기관의 업무 및 권한과 유사하거나 중복될 우려가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전담조직의 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친수구역의 지정,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관리 및 기금의 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조정 등을 위하여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에 규정된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 간 종합 연계망 구축
2. 성매매피해자등 구조체계 구축·운영 및 성매매피해자등 구조활동의 지원
3. 법률·의료 지원단 운영 및 법률·의료 지원체계 확립
4.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대책 연구 및 홍보활동
6. 성매매 실태조사 및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7.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8. 상담소등 종사자의 교육 및 상담원 양성, 상담기법의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조직·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7조(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통합적·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사업의 운영 지원
2.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된 각종 조사·연구 및 정책 분석·평가
3. 학생맞춤통합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한다)와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지원
5. 제14조에 따른 연수과정의 개발·보급
6. 제8조제1항에 따른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관 및 기존 기관과의 업무 유사 중복 비교]

구분	업무 내용		중복 기관
	교육활동 보호 전담조직	기존 기관	
유사 중복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서영교의원안 제13조의2제1항제3호)	좌동 (현행법 제29조제1항)	교육활동보호센터
	피해교원 법률지원 (서영교의원안 제13조의2제1항제4호)	법률상담, 소송비용 지원 (현행법 제21조 및 제22조)	법률지원단 · 교원보호공제사업
	피해교원 보호조치 (서영교의원안 제13조의2제1항제4호)	좌동 (현행법 제20조제1항)	관할청 (교육부장관·교육감)
	보호조치 결과 모니터링·대응 (백승아의원안 제29조의3제1항제5호, 서영교의원안 제13조의2제1항제4호)	보호조치 실시, 보호조치 조치 결과 보고 접수, 필요 시 수사기관 고발 (현행법 제20조)	관할청 (교육부장관·교육감)
	학교·교원 대상 민원 대응 (서영교의원안 제13조의2제1항제6호)	학교민원의 접수·처리 [초·중등교육법 제37조제1항(시행 2026.10.29)]	학교민원대응기구 (관할청)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모니터링·대응 (백승아의원안 제29조의3제1항제4호)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 등에 의견 제출 (현행법 제17조제1항)	교육감
미중복	①시행계획 이행 평가, ②실태조사 결과 환류, ③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세부 기준 마련, 예방 대책 수립, 모니터링 및 대응	-	-

□ 셋째, 백승아의원안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인 “교육부장관 요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에 대해 교육감의 권한과의 중복 또는 침해에 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백승아의원안에 따르면 전담조직의 업무인 “교육부장관 요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의 경우 그 방법·절차 등을 대통령령

에 포괄 위임하고 있어 그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바,

①해당 조사의 성격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권한¹⁷⁾과 별도의 조사로 볼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권한과 중복 우려가, ②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재심의 성격으로 볼 경우 교육감의 권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백승아의원안에 따른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비용 지원”의 경우 그 지원 주체와 설치·운영 주체가 동일하여, 자기

1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3.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4.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5.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보호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자신에게 지원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의 법적 성격을 지정·위탁기관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겠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에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관계기관 의견 제출]

<교육부>

-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함
- 다만, 법률지원의 대상을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한정하는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법적 분쟁이 교원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지원에 앞서 그 정당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해석 및 적용상의 어려움이 존재함
- 또한, 소송지원 등 법률지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그 범위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전담조직 설치에 정부조직사무 소관부처(행안부) 의견, 현행 「교원지위법」 체계와의 정합성, 시도의 교육활동보호 업무와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

○ 백승아의원안: 신중검토

-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4조, 「행정기관 정원 통칙」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 또는 부속기관은 대통령령(직제)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중앙교육보호센터’는 ‘교육부’에 두는 하부조직 또는 부속기관으로 판단되므로 삭제 필요

○ 서영교의원안: 신중검토

- 「정부조직법」 제2조, 「행정기관 정원 통칙」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은 대통령령(직제)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는 ‘교육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판단되므로 삭제 필요

< 시도교육청 >

○ 백승아의원안

- 인천교육청: 신중검토

- 현행 제20조제1항은 관할청과 학교의 장의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21조의 법률지원단은 관할청(교육감)이 구성·운영하는 조직이므로 이행 주체가 불일치
- 법률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20조의 보호조치 항목에 포함하는 것은 중복 규정이 될 우려
- 교육청이 소송 전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교원의 대응 역할과 책임 범위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 등’의 범위와 내용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거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충북교육청: 일부수정

- 법률 지원을 받기 전에 정당성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로 수정
- 법률지원단의 지원 범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구체
 - * 조사·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사 상담 및 입회, 의견서·진술서 등 법률서류 작성 지원, 변호사 선임 및 소송대리 지원, 소송비용 등 법률지원 비용의 지원 기준

- 경기교육청: 이견없음

○ 서영교의원안

- 대구교육청: 신중검토

- 제1호 ‘이행 결과에 대한 평가’는 시·도교육청의 행정부담과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
- 제2호에서 제5호는 교육부 전담기구의 역할과 시·도교육청의 역할이 중복될 우려
- 제6호의 경우, 초·중등교육법(2026. 10. 29. 시행)의 학교민원 대응 체계와 전담기구의 대응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충북교육청: 신중검토**

- 교육부에 중앙 전담기구만 설치할 경우 개별 학교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사안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의 지역 전담 조직과 연계한 체계 구축 필요
- 허위·악의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방지 장치가 미비하므로 엄발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근거규정 보완 필요

- **서울교육청: 이견없음**

- **경기교육청: 이견없음(명칭수정)**

- ‘학교폭력전담기구’와 유사하여 자칫 학교 내 조직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라는 명칭은 재고가 필요

○ **김기웅의원안**

- **인천교육청: 신중검토**

- 현행 제20조제1항은 관할청과 학교의 장의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21조의 법률지원단은 관할청(교육감)이 구성·운영하는 조직이므로 이행 주체가 불일치
- 법률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20조의 보호조치 항목에 포함하는 것은 중복 규정이 될 우려
- 교육청이 소송 전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교원의 대응 역할과 책임 범위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송 지원’의 범위와 내용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거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대전교육청: 신중검토**

- 수사기관이 아닌 관할청이 무고죄 성립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른 법적 부담 우려
- 관할청의 수사기관 의무 고발의 판단 기준·방법·절차를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는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 **전남광주교육청: 신중검토**

- 개정안 제19조의2제1항의 ‘조치하여야 한다’는 관할청에 법적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고, 교원 보호를 위한 관할청의 조치의 범위와 수준이 명확하지 않아 집행 과정에서 해석상 혼란과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우려
- ‘허위 사실 신고’ 및 ‘교원에 대한 보복성이 명백한 무고’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고발 의무를 부과할 경우 관할청의 행정적 부담과 법적

분쟁이 증가할 우려

- **대구교육청: 일부수정**

- 민사상·형사상 책임은 관할청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관할청의 조치 내용을 각호로 추가

- **대전교육청: 일부수정**

- 개정안 제19조의2제1항의조치 내용을 관할청이 집행가능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경기교육청: 일부수정**

-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교육감 등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3개의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만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일에 대해서는 백승아의원안 및 김기웅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서영교의원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안 부칙).

백승아의원안·김기웅의원안	서영교의원안
부 칙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3개의 개정안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①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 의무, 허위사실 및 무고에 대한 고발 의무, 법률지원단의 조력 보장 의무 등 구체적인 조치가 수반되는 의무가 부과되고, ② 새로운 전담조직이 신설되는바,

①개정안에 따른 의무 부과 시점에 대한 불필요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두어 그 시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②전담조직 신설을 위한 별도의 사전 준비 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 6788-5192

참고 1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 신고 현황

(단위: 건)

학 년 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 활동 침해 아님	합계
	상해 폭행	무고	협박	모욕 · 명예 훼손	손괴	성폭력 범죄	정보 통신망 이용 불법정보 유통	공무 및 업무 방해	성적 갈등감 혐오감 일으 키는 행위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반복적 으로 부당하게 간섭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 으로 교육활동 방해	영상·음 성 등 녹 음·녹음 합성 무 단 배포	기타		
2020	113 (9.4%)		48 (4%)	668 (55.8%)	12 (1.0%)	31 (2.6%)	27 (2.3%)	75 (6.3%)	110 (9.2%)	67 (5.6%)			46 (3.8%)		1,197 (100%)
2021	239 (10.5%)		79 (3.5%)	1,271 (56.0%)	22 (1%)	66 (2.9%)	70 (3.1%)	95 (4.2%)	207 (9.1%)	122 (5.4%)			98 (4.3%)		2,269 (100%)
2022	361 (11.9%)		132 (4.3%)	1,686 (55.6%)	20 (0.7%)	108 (3.6%)	56 (1.8%)	164 (5.4%)	223 (7.3%)	141 (4.6%)		11 (0.4%)	133 (4.4%)		3,035 (100%)
2023	503 (10%)		140 (3%)	2,221 (44%)	41 (1%)	125 (2%)	56 (1%)	168 (3%)	339 (7%)	161 (3%)	1,147 (23%)	42 (1%)	107 (2%)		5,050 (100%)
2024	518 (12.2%)	12 (0.3%)	97 (2.3%)	1,040 (24.6%)	19 (0.4%)	157 (3.7%)	55 (1.3%)	97 (2.3%)	324 (7.7%)	146 (3.4%)	1,240 (29.3%)	122 (2.9%)	98 (2.3%)	309 (7.3%)	4,234 (100%)
2025	561 (13.9%)	11 (0.3%)	93 (2.3%)	1,097 (27.2%)	30 (0.7%)	114 (2.8%)	53 (1.3%)	85 (2.1%)	298 (7.4%)	154 (3.8%)	1,057 (26.2%)	104 (2.6%)	199 (2.9%)	258 (6.4%)	4,034 (100%)

※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침해 유형을 법령·고시 순으로 재정렬 및 ‘영상·음성 등 촬영·녹음·녹음·합성 무단 배포’ 추가
(딥페이크는 주로 ‘성폭력’으로 신고되나, 사안에 따라 ‘모욕·명예훼손’, ‘영상 등 무단배포’로 분류되기도 함)

※ 2023학년도부터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 추가

참고 2

학생 ·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현황

학 년 도	학 생									보 호 자 등			
	조치 없음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전학 처분	퇴학 처분	기타 ①*	합계	조치 없음	형사 처 벌	기타 ②**	합계
2020		156 (14%)	64 (6%)	121 (11%)	506 (47%)	80 (7%)	33 (3%)	121 (11%)	1,081 (100%)		6 (5%)	110 (95%)	116 (100%)
2021	69 (3%)	296 (14%)	147 (7%)	226 (11%)	947 (45%)	195 (9%)	41 (2%)	177 (8%)	2,098 (100%)	26 (15%)	13 (8%)	132 (77%)	171 (100%)
2022 (1학기)	63 (3%)	221 (11%)	105 (5%)	170 (8%)	639 (30%)	141 (7%)	20 (1%)	116 (6%)	1,475 (100%)	53 (44%)	8 (6%)	60 (50%)	121 (100%)

* 기타① : 상담, 사과 및 반성문, 학급교체, 병원치료, 조치없음 등

** 기타② : 사과, 재발방지 서약, 학교장 면담, 상담, 특별교육, 경고장 발송 등

※ '조치없음'은 2021학년도부터 '기타①', '기타②'에서 분리됨

학 년 도	학 생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조치 없음	기타	침해 아님	합계
2022 (2학기)	169 (12%)	100 (7%)	126 (9%)	649 (48%)	58 (4%)	143 (11%)	29 (2%)	59 (4%)	25 (2%)		1,358 (100%)
2023	662 (14%)	491 (10%)	411 (9%)	2,116 (45%)	205 (4%)	492 (10%)	72 (2%)	142 (3%)	106 (2%)		4,697 (100%)
2024	881 (23.4%)	715 (19.0%)	153 (4.1%)	1,044 (27.7%)	251 (6.7%)	328 (8.7%)	54 (1.4%)	130 (3.4%)	27 (0.7%)	190 (5.0%)	3,773 (100%)
2025	763 (21.1%)	696 (19.2%)	225 (6.2%)	1,059 (29.3%)	277 (7.7%)	246 (6.8%)	36 (1%)	155 (4.3%)		161 (4.4%)	3,618 (100%)

학 년 도	보 호 자 등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조치없음	기타	침해 아님	합계
2022 (2학기)	23 (28.3%)		43 (53%)	15 (18.5%)		81 (100%)
2023	117 (33.1%)		173 (49%)	63 (17.8%)		353 (100%)
2024	171 (37.1%)	110 (23.9%)	39 (8.5%)	21 (4.6%)	120 (26.0%)	461 (100%)
2025	154 (37%)	132 (31.7%)	33 (7.9%)		97 (23.3%)	416 (100%)

※ 2022학년도 2학기부터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 유형으로 수정하였으며, '학급교체'를 '기타'에서 분리

※ 2022학년도 2학기부터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유형을 다양화함

※ 2025학년도부터 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기타' 조치 삭제함

참고 3

피해교원 보호조치 현황

학년도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특별휴가 부여	법률지 원	교사 희망으로 미조치	기타*	합계
2024	2,644 (56.3%)	463 (9.9%)	112 (2.4%)	2 (0.04%)	1,036 (22.1%)	440 (9.4%)	4,697 (100%)
2025	2,879 (66.7%)	436 (10.1%)	130 (3%)	5 (0.1%)	759 (17.6%)	108 (2.5%)	4,317 (100%)

※ 해당 현황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피해교원 대상 권고 조치와 학교장에 의한 보호조치를
합한 수치로서 실제 교육활동보호센터 또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한 지원 현황과는 다름

※ 피해교원 대상 보호조치의 내용 중 '주요 조치'와 '부가 조치'를 합산하여 계수함

참고 4

교육활동보호센터 구성 현황 ('26. 6. 30. 기준)

구분		상주							비상주			총계 (A+B)	
		센터장 /장학관	장학사	행정직	변호사	상담사	교사	기타	상주 합계 (A)	상담사	변호사		비상주 합계 (B)
서울		12	36	25	12	3	0	0	88	271	277	548	636
부산		1	1	5	1	1	0	2	11	45	60	105	116
대구		2	6	6	4	2	0	0	20	5	39	44	64
인천		6	9	4	2	4	0	0	25	50	33	83	108
전남 광주	광주	2	4	6	2	2	0	0	16	18	20	38	54
	전남	1	1	1	5	1	0	0	9	43	15	58	67
대전		1	1	3	1	3	0	0	9	26	38	64	73
울산		1	2	1	2	2	0	0	8	29	15	44	52
세종		1	4	2	0	2	0	0	9	19	11	30	39
경기		26	39	27	19	13	0	0	124	1,511	15	1,526	1,650
강원		1	2	2	1	1	0	0	7	49	195	244	251
충북		1	3	3	0	1	1	0	9	63	25	88	97
충남		3	3	3	3	4	0		16	60	8	68	84
전북		1	2	3	1	2	0	0	9	67	20	87	96
경북		14	24	10	4	1	4	0	57	17	30	47	104
경남		4	9	5	1	4	0	5	28	222	34	256	284
제주		2	1	0	1	0	2	0	6	0	31	31	37
합계		79	147	106	59	46	7	7	451	2,495	866	3,361	3,812

참고 5

교원에 대한 소송대리 등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 원문

현행	이준석의원안(제11405호)	김정재의원안(제10513호)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략) <u><신설></u> 2. 3. (생략) ②·③ (생략)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u>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u>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u><신설></u>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직무 관련성 판단 3. 4.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u>학생지도, 생활지도, 학급운영 등</u>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u>법률 상담 또는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u>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소송 지원을 하려면 미리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원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소송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먼저 소송 지원을 한 후 지체 없이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운영 및 소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현행과 같음)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해당 교원이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의 선임 또는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통한 소송대리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